

200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(안)

의안 번호	40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1. 4. .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충북의 산업구조를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게 재편하고 지식·기술집약형 벤처기업 전용 창업·육성 타운을 조성하기 위하여 오창과학산업단지내 C&S Valley에 벤처빌딩을 건립함에 있어 2001년도 재산의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(공유재산관리계획)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(공유재산관리계획)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대한 타당성을 심의 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□ 재산의 취득

○ 오창과학산업단지 C&S Valley 벤처빌딩 건립

- 위 치 : 오창과학산업단지 C&S Valley 벤처전용공단
 - 규 모 : 1,500평 [지하1층, 지상4층]
 - 용 도 : 벤처집적시설
 - 기 간 : 2001. 7월 ~ 2003.12월(30개월)
 - 사업비 : 5,000,000천원
 - 재 원 : 특별교부세 2,900,000천원, 도비 2,100,000천원
- ※ 도비확보 : 2001년 5억, 2002년 10억, 2003년 6억

3. 예산사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재산의 취득	재산의 처분	교환취득	교환처분	비고
C&S Plaza 건립	5,000,000				건물

4.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: 「별첨」

5. 관계법령 : 「별첨」

- 지방재정법 제77조
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
-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
-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9조

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서

2001년도 관리계획 총괄표(7-1)

[회계명 : 일반회계]

(단위 : 평, 천원)

구 분		당 초			변 경			합 계		
	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
취득	계	토지								
		건물			1	1,500	5,000,000	1	1,500	5,000,000
		기타								
	매입	토지								
		건물								
		기타								
	교환	토지								
		건물								
		기타								
기타	토지									
	건물			1	1,500	5,000,000	1	1,500	5,000,000	
	기타									
처분	계	토지								
		건물								
		기타								
	매입	토지								
		건물								
		기타								
	교환	토지								
		건물								
		기타								
	기타	토지								
		건물								
		기타								

2000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(7-2)

[회계명 : 일반회계]

(단위 : 평, 천원)

일련 번호	재 산 표 시			추정가액	취 득 시 기	취 득 사 유	재산취득 소 유 자 주소성명	비 고
	지목	소 재 지	수 량					
계	토지							
	건물		1,500	5,000,000				
1	토지							
	건물	오창과학산업단지 C&S Valley 벤처전용공단	1,500	5,000,000	2003.12	C&S Plaza 건립	충청북도	경제통상국 기업지원과

관 계 법 령 발 취

[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]

지 방 재 정 법	지 방 재 정 법 시 행 령
<p>제77조(공유재산의관리계획)①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</p> <p>②제1항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	<p>제84조(공유재산의관리계획)①법 제77 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 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.</p> <p>②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으로 한다. 이 경우 토지에 있어서는 제2호에 규정된 면적 이하 일지라도 제1호에 규정된 금액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포함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), 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). 이 경우 예정 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공 시지가를 건물 및 기타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. 2. 토지에 있어서는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(시·군·자 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),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3천제곱미터 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이상)

[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시행규칙]

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	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
<p>제37조(공유재산관리계획)①법 제77조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도지사가 익년도 예산편성전 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을 하여야 한다.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 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.</p>	<p>제29조(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)①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공유재산관리계획서(별지 13호서식) 2 ~ 5호 생략